■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 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 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1-140 이 승인 되었으나 1-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1-485 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 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 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 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 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 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



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 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 된 이후 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일 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 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위치의 중요성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 란트가 흔들려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부었어요, 고름이 나와요 하시며 내원하 는 환자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대게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과에 재내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시술한 치과가 없어지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내원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전 치과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조심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결하고자 할때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잘못되어 수정한 경우입니다.

50대 A 씨가 집 근처 치과에서 아래틱 두 번째 큰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 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마취가 풀리고 나서부터 수술 부위 앞쪽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통증은 수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수술한 치과에 내원해서 수술하신 원장님과 상 의를 한 후에 본원에 내원해서 원인을 파 악하고자 했습니다. 내원하신 이후 진단 을 위해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임플란트의 위치가 앞 치아 뿌리와 너무 근접해 있어서 수술 도중 치아 뿌리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상을 입은 치아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근관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치아에 상부 보철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려고 해도 기존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 기간 역시 오래 걸리고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고서 다시 상부 보철물 을 제작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환자분한 테는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다



른 대안은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좋은 위치에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마취를 해야 하지만 훨씬 간단한 방법이기에 환자분은 동의해 주셨습니다.

마취를 하고 기존에 임플란트를 제거합니다. 다시 적절한 위치에 식립하였고 원래 심었던 위치는 빈 공간으로 둘 수 없기때문에 뼈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면임플란트가 인접 치아의 뿌리와 떨어져서 그리고 보다 좋은 위치에 식립된 것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날 드레싱을 위해 내원하셨는 데 환자분은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 습니다. 일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을 때 확인한 결과 처음에 임플란트 를 심고 나서 있었던 앞 치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A 씨의 경우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주변 치아 혹은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isemusa.com

서미글보고 미국전지역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